

청소년 진로캠프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71
----------	----

제안연월일 : 2019. 1. .

제안자 : 평창군수

□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」 제7조에 의거 청소년 진로캠프 위탁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□ 관련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(사무의 위임 등)
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(의회의 동의)

□ 주요내용

○ 위탁운영 목적

- 서울소재 대학생과 함께 진로탐색 및 설계로 학생 스스로 진로를 디자인 할 수 있도록 학습방식 습득 기회 제공
-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 및 경험공유 등 멘토링 프로그램을 교육기관(법인·단체)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

○ 위탁개요

- 위탁기관 : 국내 4년제 대학 및 교육업무 법인·단체
 - ※ 4년제 대학 중 평창군 관내에 캠퍼스를 운영하는 학교 및 대학 내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학교는 수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
- 운영기간 : 2019. 7월 ~ 8월
- 위탁내용 : 관내 고등학생 1학년(잠정) 대상 멘토&멘티 운영, 진로 탐색 및 설계, 대학생활 체험 등
- 민간위탁금 : 120백만원

○ 향후 추진일정

-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 : 2019. 1월
- 사업시기, 인원, 대상 등 의견수렴 : 2019. 3월
- 민간위탁 수탁자 공모·선정·협약체결 : 2019. 4월
- 캠프 참가자 선정 : 2019. 6월
- 캠프 운영 : 2019. 7월 ~ 8월

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1부. 끝.

관계법령 발췌서

①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7조(의회의 동의) ① 군수는 제6조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을 위탁예정 9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